■ 자동차등록규칙 [별지 제21호서식] <개정 2024. 6. 18.>

수출 이행여부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 즉시

수출업자	상호		법인(사업자)등록번호
	대표자	성명 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
	전화번호		

일련번호	자동차등록번호	차대번호	차명	말소등록일	수출면장발급일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8항, 「자동차등록령」 제32조 및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41조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자동차별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(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.) 1부 -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. ※ 자동차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.	수수료 없음

유의사항

1.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2.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210㎜×297㎜(일반용지60 g/㎡)